

3. 의견 제출

「안전확인대상생활화학제품 수입요건확인 실시 요령」 제정예규(안)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20년 6월 22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[우편번호: 30103, 주소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 6로 11 환경부(화학제품관리과), 전화 044-201-6809, 팩스 044-201-6786, 전자우편: joon2111@korea.kr]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와 그 사유)
- 나. 성명(단체인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기타 참고사항

● 환경부공고제2020-563호

「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」을 개정함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리기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해 「행정절차법」 제46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.

2020년 6월 2일

환 경 부 장 관

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방법 전부개정고시(안) 행정예고

1. 개정이유

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에 대해 분리 운영되던 고시들을 통합함으로써 석면건축물 안전관리인 의무에 대한 이해도를 제고하고자 함. 또한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평가단위를 개정하고,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하는 등 일부 사항을 보완하고 재검토 기한을 연장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- 가. 제명을 「석면건축물의 위해성 평가 및 조치 방법」으로 수정함.
- 나. 기존 「석면건축물의 평가 및 조치 방법」의 위해성 평가 후 평가등급별 조치사항에 대한 표 등 고시 규정을 본 고시 후반부로 이동하고 해당 고시를 폐지함.
- 다. 기능공간별로 수행하던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를 공간별, 자재별로 수행하도록 평가단위를 수정하여 개별공간에 대한 석면건축자재 위해성 평가가 누락되지 않도록 함.
- 라. 진동, 기류 및 누수에 의한 잠재적 손상 가능성 평가기준을 수정함.

3. 의견 제출

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, 단체 또는 개인은 2020.6.23.(화)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환경부장관(참조 : 환경피해구제과장)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- 가. 행정예고 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(반대 시 사유 명시)
- 나. 성명(기관·단체의 경우 그 명칭과 대표자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- 다. 그 밖의 참고사항 등

※ 의견제출 방법

- 전자우편(이메일) : nogal99@korea.kr
- 팩스 : 044-201-6823
- 일반우편 :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6동 환경부 환경피해구제과